

재범 방지를 위한 수형자 직업훈련의 활성화 방안

박 주 상(대구예술대학교 교수)

I. 서 론

교정의 이념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다. 그 동안 교정당국에서는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안정된 사회복귀 실현을 위하여 각종 직업교육, 창업 및 취업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범죄자 중 상당수가 형벌 집행을 마치고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입소하는 수용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출소자의 재범률이 22.5%에 이르고 있어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교정교육과 사회복귀 지원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재범자의 증가는 형사사법의 최종단계인 형집행 단계에서 교정당국이 시행중인 수형자 교정·교화 활동과 교정교육 전반에 대하여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게 하며, 나아가 교정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와 일각에서는 “교도소는 회전문”, “갈 곳 없는 출소자” 등의 용어까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출소자는 출소 후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첫째, 수형자는 사회로부터 상당 기간 격리되었기 때문에 현실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출소 후 일정기간 동안은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둘째, 출소자들이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을 각오를 가지고 있어도 사회에서는 그들을 전과자로 낙인찍고 냉대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스스로 열등감과 소외감을 가지고 자기를 사회의 이단자 내지는 낙오자로 규정하고 사회적응을 포기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넷째,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기반이 취약하고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을 친족이나 지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섯째, 주변에 과거의 비행 동료나 교정시설의 동료들이 모여들어 범죄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출소자가 직면하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복귀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출소자의 재범이 출소 후 6개월 이내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소자가 교정시설에서 사회로 복귀하는 처음 과정이

그만큼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크게 심성순화와 지식습득을 위한 교정교육과 출소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직업교육으로 나뉘볼 수 있다. 통계자료와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정교육과 직업교육은 출소자의 재범 방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그러나 20%가 넘는 높은 재범율을 볼 때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정교육과 직업교육이 과연 내실 있게 진행되고 수형자들에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시행중인 수용자의 교정교육과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직업훈련 수료자에 대한 사후 관리, 출소시 사회복귀 지원방안을 고찰해 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직업훈련의 현황들을 분석하여 과정개설의 적합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직업훈련의 근본 취지를 재조명하여 교육내용과 운영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직업훈련 실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수형자 교육의 개념

교육이란 일반적으로 학교 또는 교육시설에서 정규의 훈련과정 또는 그 성과를 의미한다. 광의적 개념으로서의 교육은 사람의 태도 및 행동을 형성하는 모든 생활체험을 포함한다. 교정시설에서의 교육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교정시설에서는 교육계획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수형자를 범죄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의식적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정교육이란 수형자의 반사회적인 인성을 제거하여 수형자의 교화개선과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교정교육은 교정영역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회복귀의 방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교정교육은 교정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 활동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단순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재사회화로 건전하고 선량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일련의 교화활동을 의미한다. 현재 교정교육은 학력을 취득하기 위한 학과교육,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사회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기술 및 직업훈련, 보편적 가치습득을 위한 정신교육과 인성교육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다.

직업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직업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산업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기능, 지식, 태도를 함양하도록 도와주고, 취업한 자에게 기술혁신과 산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력을 향상시켜 자기실현을 꾀하도록 도와주는 일련의 훈련활동이다. 교정시설에서 실시되는 직업훈련은 수형자에게 규칙적인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과 고도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인력을 양성한다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공공직업훈련, 일반직업훈련, 양성훈련, 고급훈련 등이 있다.

2. 직업훈련의 개념 및 필요성

직업훈련이란 사회 구성원에게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습득시켜 그들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며, 현재 및 미래의 직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말한다. 즉, 직업훈련은 직업생활을 하는데 또는 특정 직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요구되는 지식, 기능 및 태도를 발전시켜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고혜원, 2005: 8).

이러한 직업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업적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사회교육의 일환이나 직업훈련이 실제로 실시되는 목적은 그때마다의 시대적인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대개는 근로자의 생계해결, 생활안정, 사회안정, 복지사회 구현 등의 단계를 밟게 된다. 즉, 우리나라 경제가 국민들의 호구지책에 급급하던 19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직업훈련은 근로자의 생계해결 수단의 하나이던 것이 1970년대 말까지는 경제개발 추진계획에 필요한 기능 인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고, 1980년대의 직업훈련은 과거와 같은 생계해결이나 생활안정과 병행하여 사회안정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직업훈련은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역할 수행의 단계를 거쳐 2000년대에 와서 부터는 첨단 직종으로 대대적인 변환을 가져오게 되었다.

수형자의 직업훈련교육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에게 사회복귀 후 직업에 취업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습득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교도작업¹⁾이란 수형자에게 부과하는 작업으로 교도소에서 물품을 생산, 제작, 제조, 가공, 수선하거나 공사의 완성 또는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교정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업훈련은 수형자 대상자의 재범방지와 갱생자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실증적인 설문조사 연구에서도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은 갱생보호사업의 내용 중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고 있으며(조홍식, 2004: 84), 교정기관에서 높은 기능자격을 취득한 수형자가 낮은 재범을 보인다고 한다고 한다(변동운, 1998: 453-455).

출소 후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되면 호구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방황하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에 빠지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 경우 적절한 갱생보호가 불가능할 때에 그 빈곤의 해결을 위하여 재범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수형자들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과 자영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직업전문학교·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²⁾

이러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을 형행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한다면, 재사회화모델, 재통합화 모델 및 시민화 모델에 이념적 근거를 두고 있다(장갑섭, 1997: 331-335). 재사회화 모

1) 교도작업의 본질은 형벌관념의 변천에 따라 변화하여 왔는데, 형벌관념이 교육적 개선이며 특별예방적 기능을 가진 것으로 이해되는 한 작업의 본질도 작업부과를 통한 개선이라 할 것이다. 직업훈련은 작업을 통한 개선에서 더 나아가 취업에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향상시켜 안정된 직업을 갖고 사회에 재통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정교육이다. 직업훈련은 교정교육의 하나이지만 그 발생과 훈련실시 과정에서 교도작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2) 한국갱생보호공단 홈페이지; <http://www.mojra.or.kr/>

텔은 수형자들에게 과학적이고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재범 위험성을 제거하고 준법생활을 통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인으로 바꾸는데 목적을 둔다. 재통합화 모델은 수형자와 관련자가 수평적 관계에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형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수형자들의 태도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거시적 측면에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하여 수형자들이 마찰 없이 사회로 통합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민화 모델은 수형자들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으로 인간적 성장과 자긍심 향상 등을 통하여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즉,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수형자들에게 지식교육, 직무능력향상훈련, 정신교육 등을 통하여 인간적 성장을 유도하여 권리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시민으로 양성하여 재범방지와 사회 안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3. 직업훈련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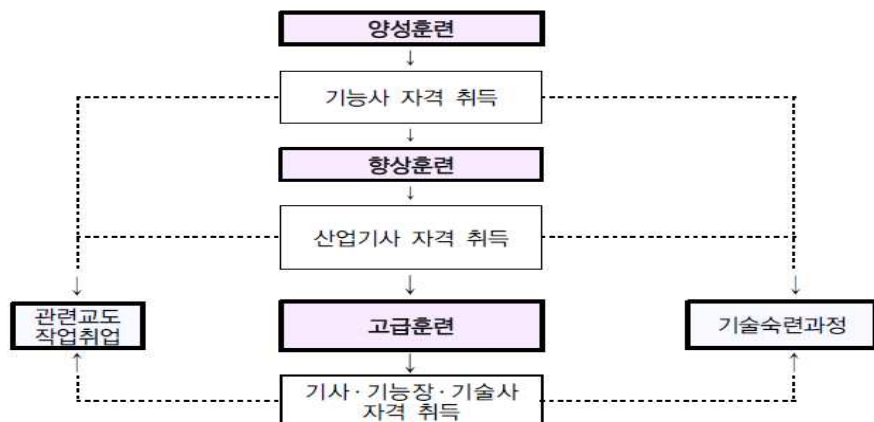
직업훈련의 종류로는 설치기준에 따른 구분과 시행방법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기준에 따라 각종 기술자격취득을 목표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과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교정기관장이 교화상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실시하는 일반직업훈련으로 구분된다.

공공직업훈련은 훈련의 목적에 따라 양성훈련과 향상훈련 및 정예훈련으로 구분하고, 일반직업훈련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양성훈련은 기초적인 직무수행능력과 기능사자격취득을 목표로, 향상훈련은 보다 더 높은 직무수행능력과 산업기사자격취득을, 정예훈련은 기초적 직무수행능력 및 정예화된 직무수행능력을 위해 기능사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을 목표로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시행방법에 따라 집체훈련, 지원직업훈련, 외부출장 직업훈련, 작업병행 직업훈련 등으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집체훈련이란 직업훈련 전담 교정시설이나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교정시설에 집금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말하고, 지원직업훈련이란 산업체 등으로부터 훈련에 필요한 훈련교사, 장비, 재료, 비용 등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직업훈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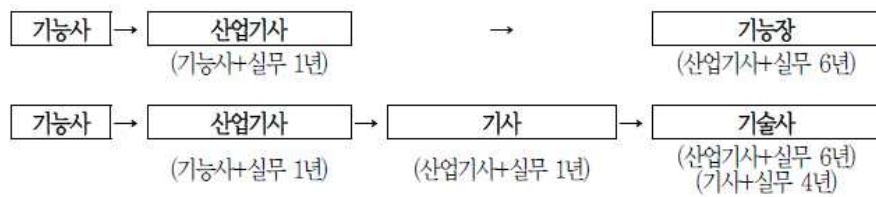
수형자 직업훈련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직업훈련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수형자 직업훈련 과정도



수형자의 직업훈련 과정은 양성훈련, 향상훈련, 고급훈련의 3단계로 나누어지고, 이는 직업훈련 직종의 수준과 자격취득 단계에 따라 기능사와 기능장, 산업기사와 기술사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직업훈련기간을 보면, 산업기사는 기능사 자격취득과 더불어 실무 1년의 직업훈련이 필요하며, 기능장은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실무 6년간의 기간이 요구된다. 또한, 기사는 산업기사 자격 취득과 더불어 실무 1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기술사는 기사자격 취득과 더불어 실무 경력 4년이 요구된다.

<그림 2> 수형자의 작업취득 단계와 직업훈련 기간



4. 직업훈련 관련 법령

우리나라에서 공적 개념으로서의 직업훈련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3년 「근로자기본법」의 ‘기능자 양성’이나 법률적으로는 1967년 1월 16일 「직업훈련법」이 공포되면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74년 12월 「직업훈련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976년에는 「직업훈련기본법」과 「직업훈련촉진기금법」이 제정되어 직업훈련을 통한 산업인력양성의 제도적틀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이후 몇 차례 개정 되어 1981년에는 여성과 중고령자, 장애인의 우선적 훈련실시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1986년에는 훈련 의무비용 산정 기준을 사업장의 근로자 수에서 임금총액기준으로 변경되었고,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점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발전하는 하였다. 또한 직업훈련의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98년 정기국회에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을 제정되었고, 2004년 12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이 법은 2005년 3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¹⁾

수형자 직업훈련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 중에서 직업훈련생을 선발하여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추구하는 교정 프로그램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수형자 직업훈련의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hrd.go.kr/>

(1) 법령상의 근거

「형집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법이라 한다). 제69조는 제1항에서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기술 습득 및 향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소장은 수형자의 직업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직업훈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형집법 시행령(직업훈련)에 필요한 설비와 실습자재 구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법 시행규칙」 제124조 내지 제128조에서는 훈련직종과 훈련 대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법무부예규상의 근거

「형집법」 등의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예규인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다. 즉 동 예규에서는 직업훈련의 기준, 직업훈련 지도(훈련교사), 직업훈련의 관리 및 운영, 직업훈련 시설 및 장비, 직업훈련물품 구입 및 수불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기타 법령상의 근거

직업훈련에 관한 근거법규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이 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조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직업훈련에 관한 기본법임을 명시하고 있다. 제27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공단체가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에서 공공직업훈련소를 설치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한 근거법규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등이 있다. 「숙련기술장려법」은 제20조(국내기능경기대회), 제22조(포상 및 상금)에서 기능경기대회와 우수자에 대한 상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Ⅲ. 수형자 직업훈련의 실태 및 문제점

1. 수형자 현황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형자의 추이를 보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2년에 4만 5,038명이 수용되어 있다.

<표 1> 수형자 수용 현황(2012년 12월 말)

구 분	소 계	기 결	미 결
초 범	16,598	15,225	1,373
재범 이상	28,440	15,973	12,467
총 계	45,038	31,198	13,840

자 료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2. 직업훈련의 실태

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기관과 과정 현황

분야는 크게 IT 관련 분야(기계, 건축, 정보처리, 산업응용, 통신)와 비 IT 관련 분야(기계, 전기, 건축, 섬유, 국토개발, 농림, 공예, 음식료, 위생, 기타)로 구분된다. 직업훈련 과정은 기능사 과정이 39개, 산업기사 과정이 14개, 기사 이상의 과정이 8개, 그리고 전문숙련 과정이 9개이다. 전체적인 직업훈련 참여인원은 3,700명으로 IT 관련 분야의 과정에 589명, 비 IT 관련 분야에 3,111명이 배정되어 있다.

<표 2> 수행자 직업훈련 과정 영역

구 분		인 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이상	전문숙력훈련
총 계		3,700	39개 과정	14개 과정	8개 과정	9개 과정
소 계		589	8개 과정	2개 과정	2개 과정	1개 과정
I T 관 련	기 계	139	컴퓨터응용선반 전산응용 기계제도	컴퓨터응용기 계	기계가공, 기능장	
	건 축	45	전산응용 건축제도			
	정 보 처 리	105	정보처리 네트워크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기사	
	산 업 응 용	55	광고디자인 승강기			
	통 신	245	정보기기운용			컴퓨터수리응용
소 계		3,111	31개 과정	12개 과정	6개 과정	8개 과정
비 I T 관 련	기 계	877	자동차 정비 용접, 판금, 도장 배관, 산업설비 전기용접 공조냉동	자동차 정비·검 사 산업설비 용접, 정밀측정	보일러시공기 능장 용접기능자	자동차 정비, 산업설비, 용접
	전 기	162	전기공사	전기		전기
	건 축	194	플라스틱창호 조적, 타일, 미장 건축도장 건축목공 실내건축 인테리어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건축기사실무	건축도장 건축일반시공
	섬 유	183	양복, 양장	양복 패션디자인		
	국 토 개 발	40	조경 실내조경			
	농 립	60	원예 화훼장식	원예실무		
	공 예	55	도자기공예 가구창조 귀금속공예			
	음 식 료	526	제과제빵 식품조리 한식조리			제과제빵
	위 생	219	이용 미용			이용
	기 타	75	피부미용	가스		

자 료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3.

2) 기술분야별 자격증 취득 현황

2012년도에는 2,8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건축 분야에서 852명 30.3%로 가장 높은 자격취득 현황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계가 577명, 20.5%, 음식료가 405명, 14.4%, 기타가 190명, 6.8%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기술분야별 자격취득 현황

구 분	자격취득 인원	비 율	구 분	자격취득 인원	비 율
기 계	577	20.5	산업응용	29	1.0
전 기	112	4.0	위 생	116	4.1
건 축	852	30.3	안전관리	11	0.4
섬 유	108	3.8	통 신	98	3.5
정보처리	102	3.6	음식료	405	14.4
농 립	151	5.4	기 타	190	6.8
공 예	62	2.2	총 계	2,813	100.0

자 료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3.

3) 수형자 자격별 취득 실적

2012년도에는 2,81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기능장이 4명, 산업기사가 252명, 기능사가 2,557명으로 나타났다.

<표 4> 수형자 기능자격취득 실적

구 분	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2007	2,506	-	2	5	237	2,262
2008	2,693	1	3	3	269	2,417
2009	2,740	-	8	2	145	2,585
2010	2,856	-	-	4	277	2,575
2011	2,803	-	2	4	288	2,509
2012	2,813	-	4	0	252	2,557

자 료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3.

4) 수형자 기능경진대회 수상 실적

2012년도에는 수형자들이 전국 및 지방 기능경진대회 수상 실적을 살펴보면, 총 85건으로 전국기능대회가 13건, 지방기능대회가 72건으로 나타났다.

<표 5> 수형자 기능경기대회 수상 실적

구 분	계	전국기능경기대회					지방기능경기대회				
		소계	금	은	동	우수	소계	금	은	동	우수
2007	153	17	4	3	6	4	136	39	36	32	29
2008	121	9	1	1	5	2	112	30	33	25	24
2009	128	10	-	4	2	4	118	30	35	28	25
2010	134	16	3	4	5	4	118	36	29	32	21
2011	83	12	1	1	1	9	71	17	19	18	17
2012	85	13	1	5	5	2	72	21	18	16	17

자 료 : 법무부 교정본부, 내부자료, 2013.

3. 수형자 직업훈련의 문제점

1) 수형자 직업훈련 운영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문제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는 달리 일정한 시설에 구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형자의 구금 확보를 위하여 자율성 확보가 어렵다. 최근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이전과 달리 직업훈련 직종의 특성화와 직업훈련기관의 전문화를 위해 투자를 하고 있으나, 일부 많은 직업훈련생을 가지고 있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나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외에는 직업훈련 환경의 여건상 전문화 추진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재구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현장 활용 가능한 직종 운영에 검토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수형자 직업훈련체제의 발전과 재정비를 위해서는 교정청별 1개 이상의 특성화된 직업훈련전담 교도소를 설치·운영하여 수형자 직업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수형자 직업훈련 전담기관의 정비와 더불어 직업훈련의 특성화와 전문화는 수형자의 선호 직종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인력부족의 문제를 갖고 있는 단기간 양성이 어려운 기능·기술 분야에서 다양한 ‘우선 직업훈련 직종’을 선정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해서 취업과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직업훈련 대상자의 선정은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과 법무부의 수형자 직업능력개발 운영계획에 의거 선정하며, 수형자의 자율적인 지원으로 선발된다. 다만, 직업훈련을 통한 자기능력개발 의지를 가진 수형자 선발의 미흡과 선발 시 직종에 따른 학력, 연령 등을 고려하는 선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간 계획 인원 확보에 치중한 나머지 부적격 대상자 선정에 따른 훈련 중 중도탈락의 비율이 높고, 장기 수형자의 경우 직업훈련을 통해서 기술습득보다는 시간 때우기 위해 참여하여 타 훈련생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직업훈련 대상자 선발은 실적위주의 훈련생 선발을 지양하고, 과정 수준에 준하는 기초

수확능력에 맞는 훈련생 선발과 연령별 수준에 맞는 직종 선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수형자에게 형이 선고되면, 분류과에서 수형자의 적성 및 소질을 분류심사하고, 형기를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직업훈련을 유도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훈련생 선발을 위한 직종 안내 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2) 직업훈련 전담인력의 문제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을 위해 필요한 인력은 전담관리 인력과 직업훈련 교사로 구분된다. 여기서 전담관리인력은 일반 교정직렬의 공무원이고, 직업훈련교사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전담관리인력과 관련해서는 잦은 순환으로 원활한 행정업무의 진행이 미흡하며, 훈련인원에 비해 전담관리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직종별 직업훈련교사의 부족으로 주 1~2회 정도 외부강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 119명의 직업훈련교사 외에 대략 130명의 외래강사를 훈련에 투입하고 있다. 이는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다. 직업훈련교사와 관련한 문제점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인력이 현재 직업훈련 기준에 의한 최소 기준에 맞추거나 혹은 그 이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 및 교육, 각종 과중한 업무처리 등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교사는 별정직이기 때문에 승진의 기회, 신분보장, 소수로의 소외감, 명예퇴직 등 다양한 처우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 7급 상당으로 시작된 직급이 평생을 해도 최고 5급까지 밖에 승진할 수 없고, 승진을 하더라도 보직이나 직위가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3) 직업훈련 시설과 예산의 문제

직업훈련을 위한 시설은 직업훈련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직업훈련을 위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교소도는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뿐이며, 이외의 교도소들은 훈련인원에 비해 협소한 장소와 장비의 부족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교정시설 직업훈련을 위한 일반회계와 교도작업특별회계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극히 적게 편성되어 있어 충분한 훈련환경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 1년 약 3억 5,000만 원의 시설장비 구입비가 편성되어 있다.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으로 직업훈련비용은 수용자의 교화개선을 위한 교육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교도작업에 의한 수입원인 교도작업특별회계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38억에 이르는 직업훈련에 따른 작업장려금 등 비용은 교도작업에 투입되어야 할 비용으로 사실상 교도작업의 재정악화와 교도작업의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일원화하고,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형자 직업훈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무부 외에 다른 정부부처의 연계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숙련과정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과 직업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수형자 직업훈련생 직업훈련 장려금은 5만 원 정도로 고용노동부의 우선선정직종 훈련수당 31만원과 재취업과정 20만 원보다 매우 낮다.

4) 직업훈련 과정과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

직업훈련을 위한 대상자 선발과정에서는 장래 희망직종이나 전망을 생각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인기직종 위주의 지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수과정에서 지나치게 질서를 강조함으로써 작은 실수에도 징계 등을 실시하여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도 탈락하는 수용자가 매우 많은 편이다. 따라서 단순한 기능사 과정은 다기능 과정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실제 대부분의 과정들이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에 치중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체현장에 대한 적응 프로그램이 미흡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기술위주로 짜여 있어 올바른 근로의식이나 올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 수형자 직업훈련이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 이전에 수형자에 대한 전문적인 성향 파악과 단기 및 장기 수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직업훈련 이수 후 자격증 취득과 취업지원의 문제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자격증 취득률은 높은 편이나, 상당수 수형자들이 직업훈련을 가석방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배운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목표보다는 취득한 자격증을 가석방에 필요한 절차 충족의 요건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다. 또한, 잔여형기가 많이 남아 있는 수형자의 경우 습득한 기능의 유지 및 숙련을 위한 활용방법이 미흡하다. 장기적으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의 개설도 수형자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서는 요구된다.

수형자의 특성상, 심층적 상담의 중착점은 훈련생의 범죄행적(입소 계기)과 연관이 되어 있으며, 사업장 내 재범발생 우려 등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업장이 소수로 한정되는 문제가 있고, 사업장에서 전과자 신분 노출로 채용 기피나 근로조건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취업의 어려움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형기 종료 전에 취업면접이 아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실제 교정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이수한 수형자의 상담과 취업지원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상적인 전문 상담이나 취업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형자의 전과사실의 표출우려로 교정기관에서의 취업알선을 기피하는 경우도 많으며, 수형자 자신이 습득한 기능에 대한 자신감 결여로 적응에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IV. 직업훈련의 활성화 방안

1. 수형자 직업훈련 인프라 구축 강화

1)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 확대

전국 교정기관 중 직업훈련을 전담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은 기능사 양성과정의 정예 직업훈련교

도소와 전문기술 숙련과정 교도소가 있다. 이들 교도소를 개칭한 후 최근 몇 년간의 괄목할 만한 교육훈련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로써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교정·교화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모범사례로 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직업훈련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직업훈련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교정청별로 전문기술 숙련과정 직업훈련 교도소를 확대한다면, 교정시설 직업훈련은 여타의 일반 직업훈련기관과 견줄 수 있으며, 긍정적 효과는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정예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전문기술 숙련과정 직업훈련교도소가 확대되어 교정청별로 1개 기관 이상의 전문직업훈련기관이 신설되어 직업훈련교사의 능력 향상과 더불어 상호 간 활발한 인적·물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직업훈련교도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첫째 교정청 소재지에 향상과정만을 통합 형태로 지역별 특성화된 직종을 제공하는 종합직업훈련교도소로 재편하는 방안, 즉 직업훈련과정에서 양성과정과 향상과정을 이원화하는 형태로 향상과정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둘째, 숙련과정을 제공하는 기존의 정예직업훈련교도소를 경북직업훈련교도소와 화성직업훈련 교도소와 같이 지역청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정책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형자의 직업훈련 참여 희망이 전체 수형자 대비 20% 정도가 되어야 하고, 특히 수형자가 직업훈련 참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시적 유인가인 직업훈련 후의 가석방이나 취업알선 및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책이 현재보다 많아야 한다.

2) 교정청별 직업훈련 특성화

전국의 교정청별로 훈련직종을 세분화하여 동일직종 분야의 훈련공과는 하나로 그룹화하여 교도소별로 분류 수용하고, 직종 분야별로 통합화되고 특성화된 직종을 특정 교도소로 전담시켜 직업훈련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직업훈련 기준에 준하는 직업훈련교사의 확보

교육훈련수요 욕구에 맞게 직업훈련교사 1인이 여러 직종을 담당하고 있는 곳은 한두 개의 공과로 통폐합하여 한 개의 공과에서 받을 수 있는 교육훈련을 지향하여 수준이 있는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 직종별 훈련생의 총원 기준이 30명을 초과하면 직업훈련교사 2인(실기교사 포함) 기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선 직업훈련 현장에서는 직업훈련교사 1인이 모든 교육훈련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아 직업훈련의 교육 효과 달성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또한, 직업훈련 외에 근로의식 함양이나 취업소양교육을 위한

전문교사를 교정청별 직업훈련교도소에는 배치하여 지역의 관할 교정시설에서 순회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직업훈련교사의 적정인원 확보와 더불어 이들 직업훈련교사들은 필기시험 면제에 충족하는 직업훈련교사와 산업기사 자격 취득을 위해 강의와 실무가 가능한 직업훈련교사로 충원해야 한다. 또한, 교양교육, 즉 직업생활, 체육 등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교사를 교정청별 종합직업훈련교도소에 배치하여 지역에서 순환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할 필요가 있다.

4) 적정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 및 일반회계로의 전환

현재는 직업훈련 예산으로 정부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별도의 세입·세출 예산을 경리하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별도의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고, 예산책정이 해마다 이루어지는 형식이라 적절한 직업훈련 예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하는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안정적인 예산확보로 중장기적인 직업훈련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직업훈련 장비나 시설을 시의적절하게 확충하는 등 체계적인 직업훈련계획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회계예산으로 정부예산에서 별도로 직업훈련 예산이 책정되는 시스템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계획적인 직업훈련을 어렵게 하고, 직업훈련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5) 수형자 직업훈련 유관기관 간의 협력망 구축

수형자 직업훈련과 관련된 유관기관들(산업인력공단 산하 폴리텍대학 유사 직종과 협력, 대한상의 직업훈련소 유사직종과 협력)은 교정기관별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교정기관별 협력망은 직업교육을 받은 수형자가 출소 후 연고지에서 안정된 직업을 찾고자 할 경우, 인근 교정기관의 직업훈련 부서에서 취업처를 찾도록 협력하는 관계망을 구축하는 등 수형자 취업분야에 대한 지원형식이 우선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창업·취업 분야에 있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6) 수형자에 대한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체제

수형자 취업의 특성은 수형생활 전에 종사하던 직종에 종사하려는 전직회귀성향이 있고, 오랜 수형생활은 고향이나 친·인척 거주지 등 연고지로 귀향하여 직업을 찾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또한, 수형자의 특성상 심층적 상담의 중착점은 훈련생의 범죄행적(교도소 입소 계기)과 연관되므로, 친밀성이 떨어지는 직업상담사와의 면담보다는 담당 훈련교사와의 진로상담이 친밀한 유대감으로 인해 취업상담의 효과가 클 수 있다. 따라서 수형자 진로상담은 1, 2차로 구분하여 1차적으로 담당 직업훈련교사와 취업상담을 하고 2차적으로 전문직업상담사와 면담하여 취업의 효율을 극대화시켜 재범방지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7)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표준화

수형자의 직업훈련은 안정된 수형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측면과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직업능력을 배양한다는 실리적 측면이 함께 병존한다. 전자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일반적인 수형 생활에 극도의 부적응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수형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면, 강력사범(살인, 조폭, 마약, 성폭력 등) 출신 등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훈련의 목표를 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사범(절도나 무직 생활로 인한 생계형 범죄 전력자 등)이나 우발적 범법행위자 등과 구분이 없이 혼합교육하는 것은 일반 직업훈련생에게 강력사범들의 악성적 범죄 성향을 모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출소 후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육적

효과의 측면뿐 아니라 제법의 예방적 측면에서도 직업훈련 대상자를 수용자 경비등급으로 더욱더 세분화하여 엄정한 선정을 위한 표준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직업훈련 이수과정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1)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분기별(3개월), 반기별(6개월), 연간(1년), 2년(산업기사반) 등으로 이수 단위를 세분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직업훈련의 직종은 훈련과정 입소 전에 결정되어 대부분 6개월이나 1년여 간 동일 직종을 이수하는 시스템이므로 훈련 도중에 직종을 변경하거나 다직종, 다기능을 취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형기가 길더라도 직업훈련 기간이나 기회는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업훈련생의 선택의 폭을 넓혀 단계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보다 좋은 교육훈련의 질적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다. 그 예로, 기능사(6개월) 과정 취득 후 연계하여 산업기사(2년), 전문학사 과정(2년)으로 개연성이 있는 훈련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단순 기능사 과정에서 다기능 과정으로의 확대

단순 기능사 과정에서 취득한 기능사라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사회에서 큰효용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자격증 취득 후에도 다기능 과정의 기술숙련만이 직접적인 취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자격증에 대한 인정이나 활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직업훈련생들이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건축시공과의 경우 직업훈련생의 건축분야 기능사 자격증 분포는 타일, 미장, 조적 등을 비롯하여 10여 종 이상이 되어 직업훈련생 상호 간에도 미취득 자격 종목이 많고, 산업현장의 취업전망을 보아 취업에 직접적인 효과가 클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를 선정하여 자격증 취득 과정을 보조적으로 운영하고 대처하고 있다.

3) 취업 유망 직종을 고려한 직업훈련 직종의 개발

직업훈련의 궁극적인 목표가 훈련생이 출소 후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습득에 있으므로 취업유망직종을 새로이 개발하여 어려운 취업현실에 대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수행자 직업훈련의 특성 중 신분상으로 볼 때 별정직 직업훈련교사의 전공분야, 임용특징, 기존장비의 활용적인 측면 등 인적·물적 고정적 요소로 인해 취업유망 직종을 고려해 시의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특성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직업훈련 종목 중동일 계열 중에서도 좀 더 취업에 유망한 직종을 선별하여 특정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산업체와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 강화

수행자 직업훈련에 있어 산업체와 연계한 현장실습은 일반 수행자와 처우 상의 형평성 문제, 훈련생의 계호측면 등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산업체

와 연계된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산업체를 선별하거나 산업체의 인프라를 훈련장 안으로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나 산업체의 임직원이 훈련장 외래 강사로 교육하는 방법 등이 있다.

5) 취업률 제고를 위한 가칭 ‘맞춤형 취업약정제’ 프로그램의 운영

‘취업약정제’ 프로그램은 교정시설과 산업체와의 취업연계협력의 하나로 교정시설과 산업체가 직업훈련을 통한 자격취득 후 출소 전까지 수형자 중 산업체 맞춤형 향상 교육훈련을 통해 매년 일정한 수형자를 취업시킬 수 있도록 상호 약정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취업약정제’는 강제적인 의무 약정제는 아니지만, 산업체의 맞춤형 인력 요구와 직업훈련 이수 수형자의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이다.

‘취업약정제’ 프로그램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산업체는 맞춤형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인턴십 및 현장실습을 허용하고 공동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육훈련 이수 수형자를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교정시설과 산업체와의 협력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부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6)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표준 매뉴얼 개발·보급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고, 교정시설별 많은 직업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일반인이나 수형자가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실정이다. 직업훈련 표준 매뉴얼은 수형자,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전담 행정인력, 산업체,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일반 직업훈련과정과 지원에 대한 준거와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해야 하며, 수형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현장실습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지침, 취업능력카드제의 내용 등을 함축해야 한다.

3. 직업훈련교수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 강화

1)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 및 직급 조정

교육훈련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위치에 있는 직업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육의 주체라 할 수 있다. 직업훈련교사의 일반직화는 별정직 신분에서 있을 때 보다도 더 안정적인 지위에 있게 되므로 보다 발전된 형태의 직업훈련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근속 연한에 있는 경우, 일반직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직급으로 직업훈련교사의 직급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직업훈련교사의 연수 강화 지원

수형자 직업훈련의 주체인 직업훈련교사의 연수기회는 법무(교정)연수원이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신기술 연수교육 및 전문 집체교육 등 1~2주간의 한정된 연간교육 이수가 전부인 실정이다.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직업훈련교사의 자질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면,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한국폴리텍대학 수준의 교원연수(장·단기 국외연수 등)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3) 우수 직업훈련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훈련생의 교육효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 취업실적 등으로 성과급의 차등 지원, 차별화된 수당 지급 등의 금전적인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과 승진 및 전보 기회 등 인사상의 차별화 등 인센티브를 세분화하여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4) 훈련생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대한 행형 성적 반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 즉 훈련자원의 중요성은 직업훈련에 앞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지원자가 많으면 훈련과정(직종)에 적합한 훈련생을 적절히 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기관이 멀거나 훈련환경이 불리하면 지원하려는 훈련생이 많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직업훈련 대상자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행형 성적은 수용자 분류 등급 체계나 가석방 심사 등에 반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직업훈련 수료 후 자격 취득자에 대해서는 합동접견 및 가족만남의집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혜택 부여가 필요하다.

5) 국가기술자격 취득과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

학점은행제와 연계한 전문학사 과정 개설을 언급하기 전에 이에 맞는 수용자 신분의 학력이 먼저 선행조건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예 : 고졸이상의 학력자). 현행 제도하에 기술자격별 학점인정 범위는 산업기사(12학점), 기사(24학점) 등이다. 국가기술자격 취득 과정은 기능사나 산업기사(기능사 취득 후 1년 경력이면 응시 가능) 과정을 운용하여, 자격취득을 하게 된다. 자격취득 후 실무적 과정을 거친 훈련생은 곧바로 기사 취득(기능사 취득 후 3년, 산업기사 취득 후 1년 경력) 자격이 발생되므로, 산업기사나 기사를 취득한 훈련생은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의 길을 열어 줄 수 있다. 또한, 전문학사 자격취득에 요구되는 학점은행제의 전공필수나 이론전공 이수학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원격수업방식(온라인 강좌)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시스템의 체계적 구축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전문학사 과정의 학점인정 전담직업훈련교사와 학점인정교과 등을 세부 전공별로 선별하여 학점은행에 등록하여 교육훈련 이수 후에는 학점을 병행하여 취득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V. 결 론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범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종 직업에 취업하는 데 필요한 기능과 기술을 습득하는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교정시설

에서 수형자 직업훈련은 사회의 일반인 대상 직업훈련과 달리 노동시장이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간 정부차원에서도 교정시설의 수형자 직업훈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나, 정부의 수형자 직업훈련은 그 중요성에 비하여 범정부적인 관심이 부족하고,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사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대책이 수립 제시되었더라도 추진 및 시행 과정에서 현실화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수형자의 직업훈련 현황과 문제점을 정밀진단하고 실태 및 요구조사 분석을 통해 향후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의 재정비와 직업훈련 참여 수형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들은 교정시설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를 강화·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실행 방안들을 구안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교정시설에서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궁극적 목적은 출소 후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다. 즉, 이는 출소자들의 대부분이 기능과 기술도 없고,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 생활의 제약과 취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재소 중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훈련을 통하여 기능·기술을 습득하고, 필요 시 연계된 국가 및 민간 자격증을 취득케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교정시설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은 정부의 거시적 지원 방향의 설정과 더불어 수형자 직업훈련 체제의 재정립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2). 2012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혜원. (2005). 중·장기적 지역별 인력 및 직업훈련 수요전망에 대한 분석·평가.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국정브리핑. (2006). 출소자 취업지원 적극 확대. 2006년 10월 31일.
- 김미란·손유미·임찬영. (2004). 수형자 직업훈련 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부·법무부.
- 김영식·서호영. (2009). 수형자 사회복귀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교정연구, 제42호.
- 김용구·김재경. (2009). 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법학연구, 제33집.
- 김종덕. (2003). 범죄자처우의 모델의 결합론적 모색. 교정연구, 제21호.
- 문영호·이인순·박강우. (1993). 수형자 직업훈련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박주상. (2008). 갇혀있는 수형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19권.
- 법무연수원. (2005). 2005 범죄백서 통권 제22호. 용인: 법무연수원.
- 변동운. (1998). 재범방지와 수형자 직업훈련제도. 교정연구, 제8호.
- 오원선. (2003). 수형자 직업훈련교육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 . (2004). 한미 수형자 직업훈련에 관한 비교연구. 교정연구, 제25호.
- 이태언. (1998). 갇혀있는 수형자의 직업훈련에 관한 연구. 외대논총, 제18집 제11권.
- 장규원. (2007). 교도작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8권 제3호.
- 정갑섭. (1997). 형행처우모델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7호.
- 조준현. (2005). 전통적 형벌에 대한 대안적 제재의 근거와 형사정책적 문제점 소고. 교정연구, 제22호.
- 조흥식. (2004). 우리나라 갇혀있는 수형자의 직업훈련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연구보고서.
- 한국갱생보호공단. (2007).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서울: 한국갱생보호공단.
- 한순옥. (2001). 갇혀있는 수형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중요성. 갇혀있는 수형자, 제19호.
- 홍태선. (2002). 출소자 복지증진과 갇혀있는 수형자의 직업훈련 활성화 방안. 교정연구, 제14호.
- Pritchard David A. (1970). Stable Predictors of Recidivism: A Summary. *Criminology*, Vol. 17.
-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http://www.corrections.go.kr/>
- 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http://www.hrd.go.kr/>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http://www.korchamhrd.net/>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한국갱생보호공단 홈페이지; <http://www.mojra.or.kr/>
- 한국갱생보호공단 서울지부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tlfvmfld?Redirect>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http://www.hrdkorea.or.kr/>